

2025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부제: 미허가 동물약품은 No



목차

INDEX

01

PLS 이해하기

02

축산물 PLS
도입 배경 및 경과

03

축산물 PLS
도입 방향 및 추진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06

축산농가 준수사항

01 PLS 이해하기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란?

근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약처 고시)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개념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동물용의약품을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관리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일괄기준(0.01 ppm) 적용

| 식품공전 | | PLS 도입 전(~'23.12.31.) | PLS 도입 후('24.1.1.~) |
|-----------|---|--|--|
| 기준 설정 물질 | 축산물 |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 좌동 |
| 기준 미설정 물질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1단계, '24.1.1. 시행) |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 순차 적용 ① CODEX 기준 ② 유사축종 최저기준 ③ 항균제 0.01 mg/kg 이하 ('22.1.부터 적용) | 0.01 mg/kg 일괄 적용 • 단,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 |
| | 기타 축산물 (2단계, 이후 시행) | | |

* PLS : Positive List System

(182) 플로르페니콜(Florfenicol) : 항균제

◎ 잔류물의 정의 : Florfenicol과 florfenicol amine의 합을 florfenicol로 함

| | | | | | |
|------|-----|------|------|------|-----|
| 소근육 | 0.2 | 양근육 | 0.2 | 염소근육 | 0.2 |
| 소간 | 3.0 | 양간 | 3.0 | 염소간 | 3.0 |
| 소신장 | 0.3 | 양신장 | 0.3 | 염소신장 | 0.3 |
| 돼지근육 | 0.3 | 가금근육 | 0.1 | 어류 | 0.2 |
| 돼지지방 | 0.5 | 가금지방 | 0.75 | 갑각류 | 0.1 |
| 돼지간 | 2.0 | 가금간 | 2.5 | | |
| 돼지신장 | 0.5 | 가금신장 | 0.2 | | |

01 PLS 이해하기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이란?

용어 이해

동물용의약품 사용은 '안전사용기준'으로, 소비자 안심섭취는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

| 구분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농식품부 고시) |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MRL, Maximum Residue Limit)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 [식약처 고시] |
|----|--|--|---|
| 개념 | <p>안전기준: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준</p> <p>사용기준: 가축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p> | | <p>식품 중에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최대농도(mg/kg 또는 mg/L)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허용량</p> |
| 근거 | <p>약사법(식약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85조제2항)</p> | <p>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 안전사용기준 정해 고시할 수 있다.(제46조)</p> | <p>식품위생법(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8)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 금지물질, [별표 5] 잔류허용기준, [별표 7] 기준 면제물질</p> <p>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 - 잔류허용기준 미지정 물질→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진 후 해당 품목을 제조·수입하여 판매</p> |
| 예시 | <p>디클라주릴(사용설명서) 효능·효과: 닭 콕시듐증의 치료 용법·용량: 닭(산란 중의 닭 사용금지) - 경구투여(음수 1리터당 본제 0.05~0.10ml 비율로 희석하여 2일간 연속투여) 주의사항 예시) 휴약기간(닭 2일, 산란개시 4주 전부터 사용금지)</p> | <p>암피실린(사용설명서) 효능·효과: 송아지·돼지 세균성 설사증, 닭 대장균증 치료 용법·용량: 음수 또는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송아지(1일 체중 100kg당 본제 4-15g 암피실린으로서 400-1500mg) - 돼지/닭(1일 체중 10kg당 0.5-2g/1-2g 암피실린 50-200/100-200mg) 주의사항 예시) 휴약기간(소, 돼지: 5일, 닭: 3일, 착유중인 젖소에는 사용금지, 산란중인 닭에는 사용금지)</p> | <p>(29)디클라주릴: 항원총제 소·양·토끼·닭·오리·칠면조 근육(0.5), 지방(1.0), 간(3.0), 신장(2.0) 알(0.01)</p> <p>(108)암피실린: 항균제 소·돼지·양·염소·말·닭 근육·지방·간·신장(0.05) 알(0.01)</p> |

01 PLS 이해하기

동물용 의약품등 관련 용어

동물용의약품이란?

-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함 (양봉용·양잠용·수산용·애완용 의약품 포함)
- **동물용의약외품**은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축사소독제, 해충 구제제, 영양 보조제 등)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휴약기간이란?

-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에 대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 등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대상동물(가축)이란?

- 소(착유우 포함), 돼지, 닭(산란계 포함) 등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을 말함
 - 착유우란 식용 목적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비유 중인 젖소이며
 - 산란계도 식용 목적의 알을 생산하기 위해 산란 중인 닭을 의미함
 -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출하제한기간은?

- 수의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동물체내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출하) 전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의미함
 -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02 축산물 PLS 도입 배경 및 경과

시사상식사전

살충제 계란 파동(2017)

요약 2017년 7월 유럽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과 가공식품이 유통되면서 파문이 확산된 이후, 그해 8월 국내산 계란에서도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살충제 계란 사건('17.8)
동물약품, 농약
오남용 관리 필요성 제기



축산물 섭취량 증가로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 1인당 육류 소비량 : 아시아 국가 중 1위(OECD/FAO, '20)

02 축산물 PLS 도입 배경 및 경과

도입 경과

'17.12.27, 총리실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마련,
축수산물 PLS 도입 결정



'20.12.23, 부처합동
축산물 PLS 단계적 시행
합의(주요축종→기타)



'21.3.25, 농식품부
축산물 PLS 도입
추진계획 마련

- 먹거리 안전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 TF 구성('17.9)
- **식품안전 개선책**(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 **축산물 PLS 도입**
내용 포함

- 분야** (1) 축산(가금)산업 선진화-
- 과제**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

- 동물약품 허가사항, 비의도적
오염 성분 실태조사 등 준비기간
고려, 단계별 시행 합의
- **(1단계) 소·돼지·닭·우유·달걀 다소비
축산물 + 동물약품 우선** 시행

- 농식품부** 농가 11,000 호 실태점검
- ✓ 동물약품 확충, 안전사용기준 정비,
동물약품 관리체계 강화 등
- ✓ 생산단계 잔류물질 안전관리 체계화,
농가 교육·홍보 등
- 식약처** 동물약품 잔류기준 정비
- ✓ 기준 재설정, 시험법 설립
- ✓ 사용금지물질, 기준면제물질 정비
- ✓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 축산물 PLS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파악 및 세부 대응
방안(6대 과제) 추진 중
- '21.6.29. 식약처 고시 개정(1단계 도입)
✓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 는 **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0.01 mg/kg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을 적용한다.
- '24.1.1. 1단계 시행

02 축산물 PLS 도입 배경 및 경과

추진 경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서 축수산물 PLS 도입 결정 (2017.12)

-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계기 (2017.8)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수산물 PLS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속 (2018.01~)

- 동물용의약품 단계별(주요축종 →기타) 도입 확정(2020.12)
- 주요 축종 및 어류/동물용의약품 PLS 시행(2024.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 확충, 동물약품 오남용 관행 개선 및 교육·홍보

- 축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 추진계획 마련(2021.3)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내허가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사용기준 정비(2017~)

- 일률기준 적용 품목에 대해 잠정 휴약기간 등 재검토('17~)
- * 일률기준 적용 57종: ('15) 20종, ('16) 28종, ('17) 9종
- 잔류성 시험 및 서면 검토를 통해 휴약기간 등 정비('20~)
- * 잔류성 시험 180종: ('20) 24종, ('21) 52종, ('22) 45종, ('23) 59종

03 축산물 PLS 도입 방향 및 추진

도입 방향

동물의약(외)품 허가 등록 및 의약품 성분별 식품 잔류 허용량 여부, 사료 및 축사 관리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실태조사 등 사전준비 기간을 반영, 축산물 PLS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1단계

- (시행) 24.1월
- (대상)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 * 소, 돼지, 닭, 젖소, 산란계
- (성분) 동물용의약(외)품



2단계

- (시행) 부처협의
- (대상) 기타 축산물*로 확대
 - * 염소, 오리, 양 등 추후 검토
- (성분) 비의도적 혼입 농약까지 확대

단계적 도입을 위한 세부 과제 및 추진

축산물 PLS 도입 전 사전 점검 분야 및 세부 대응 방안(6개 과제) 마련

1

동물의약(외)품 확충

농가 가용 약품 확보

2

동물의약(외)품
안전사용기준 정비

기 허가등록제품 전체 재평가

3

축산물
잔류허용기준 정비

기준 신설 · 조정(식약처 협업)

4

동물약품
처방 · 유통 · 사용
관행 개선

관련 제도개선 및 지도 · 홍보

5

축산물
잔류물질관리 강화

잔류검사항목 정비,
동시다성분분석법 확립 등

6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방지

사료 및 농약 잔류 실태 조사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동물용의약품 확충

1 동물의약(외)품 확충

추진 방법

축종별 약품 구비현황 및 농가 동물약품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축종 확대가 필요한 품목 발굴

※ 11,000호 농가 대상으로 동물약품 사용 실태조사('19 예비조사, '20 본조사) 실시

2 동물의약(외)품안전사용기준 정비



결과 반영

추진 방법

축산물 PLS 대상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 전면 재검토

- 기 허가등록된 전체 동물약품(2,554제품) 중 60%(1,536제품) 재정비 완료(~'20)
- 이 중 안전사용기준(투약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재평가 대상*(1,018제품) 발굴, 서면평가(376제품)와 잔류성 시험평가(642제품/180개 대표품목) 계획 수립

*잠정휴약기간 적용 제품, 휴약기간 상이 또는 미설정 제품, 잔류자료 미확보 제품 등

추진 완료

①(서면평가:376제품) 잔류수준을 감안한 휴약기간 정비

※ 나이카바진, 데코퀴네이트, 샘두라마이신, 테트라미졸, 플루벤다졸 등

②(시험평가: 180품목) 잔류시험분석 예산(120억) 확보 및 시험 추진, 안전사용기준 정비

※ ('20) 24품목 → ('21) 52품목 → ('22) 45품목 → ('23) 59품목

* 소 41, 돼지 34, 닭(육계·토종닭) 23, 우유 45, 알(산란계) 37품목

< 산란계·육계·토종닭 대상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정비내역 >

| 동물용의약품 | 대상 | 용법·용량 | 기준 | 휴약기간 | 비고 (조사연도,대상) |
|-------------------------|----------------|--|---|---------------------------------|-----------------|
| ADBAC 함유 축체살포제 | 축체 또는 축체표면(삭제) | 0.0625%의 희석액(마리당 9.4mg)을 1일1회 7일간 축체 살포 또는 0.05%의 희석액(마리당 7.5mg)을 1일1회 7일간 축체 살포 | - | 가축에 직접적으로 살포 금지-반드시 빈축사에서 사용할 것 | 21(돼지, 닭, 알) |
| DDAC 함유 축체살포제 | 축체 또는 축체표면(삭제) | 0.0625%의 희석액(마리당 9.4mg)을 1일1회 7일간 축체 살포 또는 0.05%의 희석액(마리당 7.5mg)을 1일1회 7일간 축체 살포 | - | 가축에 직접적으로 살포 금지-반드시 빈축사에서 사용할 것 | 21(돼지, 닭, 알) |
| 네오마이신 함유 사료/음수첨가제 | 닭 | 사료 톤당 50g 또는 음수 L당 50mg(체중 kg당 12mg) 이하의 양을 혼합 또는 녹여 3일간 경구투여 | 닭 3일, 산란계 사용금지 | 닭 3일, 알 없음 | 21(알) |
| 린코마이신 함유 사료첨가제 | 닭 | 사료 톤당 4.4g 이하의 양을 혼합 경구 투여 | 닭 0일, 산란계 사용금지 | 닭 0일, 알 없음 | 21(알) |
| 린코마이신+스펙티노마이신 함유 사료첨가제 | 닭 | 사료 톤당 린코마이신 66g, 스펙티노마이신 66g 이하의 양을 혼합하여 21일간 경구투여 또는 사료 톤당 린코마이신 110g, 스펙티노마이신110g 이하의 양을 혼합하여 5-7일간 경구투여 | 닭 3일 산란계 사용금지 | 닭 3일, 알 없음 또는 3일 | 21(알) |
| 바시트라신(아연) 함유 사료첨가제 | 닭 | 사료 톤당 40g 이하의 양을 혼합 경구투여 | 닭 0일, 산란계 사용금지 | 닭 0일, 알 없음 | 21(알) |
| 사이퍼메트린 함유 축체살포제 | 닭 | 1 마리당 10mg 이하의 양을 1회 축체살포 또는 0.06% 이하의 사이퍼메트린을 1회 축체살포 | 닭 21일, 산란계 사용금지 | 닭 63일, 알 없음 | 22(알), 22(닭) |
| 암프롤리움 함유 음수첨가제 | 가금(닭, 칠면조) | 음수 L당 240mg 또는 250mg 이하의 양을 녹여 3-5일간 경구투여 | 닭, 칠면조 1일, 산란중 사용금지 (일부 휴약기간 표시없음) | 닭 2일, 칠면조 2일, 알 없음 | 20(알), 21(닭) |
|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함유 사료/음수첨가제 | 닭 | 음수 L당 210.5mg 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또는 사료 톤당 400g 이하의 양을 혼합하여 14일간 경구투여 | 닭 5일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 닭 5일, 알 없음 | 20(알) |
| 콜리스틴 함유 사료첨가제 | 닭 | 사료 톤당 콜리스틴 5g 이하의 양을 혼합하여 경구투여 | 닭 5일, 알 0일 | 닭 5일, 알 없음 | 22(알) |
| 콜리스틴 함유 음수첨가제 | 닭 |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50,000IU 이하의 양을 희석하여 5일간 경구투여 | 닭 0일, 산란계 사용금지 | 닭 0일, 알 없음 | 22(알) |
|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갈슘염 사료첨가제 | 닭 | 사료 톤당 550g 또는 1,320g 이하의 양을 혼합하여 5일간 경구투여 | 닭 7일,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 닭 3일 또는 5일, 알 없음 또는 5일 | 20(알), 21(닭) |
|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함유 음수첨가제 | 닭 | 음수 L당 69mg (체중 kg당 10mg, 저용량)을 녹여 14일간 경구투여 또는 음수 L당 528mg 이하의 양을 녹여 3일간 경구투여 | 닭 2일,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 닭 3일 또는 7일, 알 없음 | 21(알), 22(닭) |
| 트리클로르폰 함유 축체살포제 | 가금(닭) | 물 L당 20g (마리 당 300mg) 이하의 양을 혼합하여 축체에 1회 살포 | 가금 20일 | 닭 42일, 알 없음 | 23(알), 23(닭) |
| 티아몰린히드로겐푸마레이트 함유 사료첨가제 | 닭 | 사료 톤당 200g 이하의 양을 혼합하여 14일간 경구투여 | 닭 5일, 7일, 일부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또는 산란계 사용금지 (일부 휴약기간 표시없음) | 닭 5일, 알 없음 | 20(알), 21(닭) |
| 티아몰린히드로겐푸마레이트 함유 음수첨가제 | 닭 | 음수 L당 250mg 이하의 양을 녹여 3-5일간 경구투여 | 닭 3일, 5일, 7일 일부 산란계 사용금지 (일부 휴약기간 표시없음) | 닭 5일, 알 없음 | 20(알), 21(닭) |
| 피페라진 구연산염 함유 사료/음수첨가제 | 닭 | 마리 당 275mg 이하의 양을 사료 또는 음수 혼합 1회 경구투여 | 닭 5일, 산란계는 산란 개시 14일 전부터 사용금지 | 닭 5일, 알 없음 | 22(닭), 22(알) |
| 겐타마이신 함유 주사제 | 닭(산란계 제외) | 마리당 2mg 또는 체중 Kg당 2mg 이하의 양을 1일 1회 이하 근육주사 | 닭 40일 산란계 사용금지 | 닭 42일, 산란개시 4주 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 22(닭), 23(알) |
| 독시사이클린 함유 음수첨가제 | 닭(산란계 제외) | 음수 L당 100mg 이하의 양을 희석하여 5일간 경구투여 | 닭 7일,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 닭 7일, 산란개시 8주 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 23(알) |

< 산란계·육계·토종닭 대상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정비내역 >

| 동물용의약품 | 대상 | 용법·용량 | 기준 | 휴약기간 | 비고 (조사연도,대상) |
|---------------------|-------------|--|--|--|--------------------|
| 디클라주릴 함유 사료첨가제 | 닭(산란계 제외) | 1일 용량으로 사료 톤당 1g이하의 양을 혼합 경구투여 | 닭 5일 또는 없음 | 닭 1일 산란개시 2주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 21(닭), 22(알) |
| 디클라주릴 함유 음수첨가제 | 닭(산란계 제외) | 1일 용량으로 음수 L당 2.5mg 이하 (체중 kg 당 0.3mg)의 양을 녹여 2일간 경구투여 | 닭(육계) 5일 | 닭 2일 산란개시 4주 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 21(닭), 22(알) |
| 레바미솔 염산염 함유 경구제 | 닭(산란계 제외) |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30mg 이하의 양을 사료 또는 음수에 혼합 1회 경구투여 | 닭 5일, 12일, 일부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 닭 10일, 산란개시 2주 전부터 사용금지 | 21(닭), 21(알) |
| 린코마이신/스펙티노마이신 음수첨가제 | 닭 | 음수 L당 린코마이신 167mg, 스펙티노마이신 334mg 이하의 양을 녹여 3일간 경구투여 | 닭 2일, 5일, 산란계 사용금지 | 닭 5일, 알 5일 | 21(알), 22(닭) |
| 린코마이신/스펙티노마이신 주사제 | 닭 |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린코마이신 10mg, 스펙티노마이신 20mg 이하의 양을 3일간 근육주사 | 닭 23일, 산란계 사용금지 | 닭 14일, 알 7일 | 23(알), 23(닭) |
| 모넨신 함유 사료첨가제 | 닭(산란계 제외) | 사료 톤당 모넨신 나트륨 121g 이하의 양을 혼합 경구투여 | 닭 3일, 산란계 사용금지 또는 닭(육계) 3일 | 닭 1일, 산란개시 2주 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 22(닭) |
| 사이로마진 함유 사료첨가제 | 닭(육계 제외) | 사료 톤당 5g 이하의 양을 혼합하여 28일간 경구투여 | 닭 3일, 육계 사용금지 | 닭 3일, 알 3일 | 21(알, 닭), 22(알) |
| 아목시실린 함유 사료/음수첨가제 | 닭(산란계 제외) | 1일 용량으로 체중kg당 50mg 이하의 양을 사료혼합 또는 음수에 녹여 5일간 경구투여 | 닭 15일,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 닭 5일, 알 5일 또는 산란개시 2주 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 21(알), 22(닭) |
| 아목시실린+브롬헥신 함유 경구제 | 닭(산란계 제외) |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아목시실린 50mg, 브롬헥신 10mg 이하의 양을 사료 혼합 또는 음수에 녹여 5일간 경구투여 | 닭 15일,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 닭 5일, 산란개시 2주 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 22(알), 22(닭) |
| 암프로리움+에토파베이트 음수첨가제 | 가금(산란가금 제외) | 음수 L당 암프로리움 240mg, 에토파베이트 15.2mg 이하의 양을 녹여 7일간 경구투여 | 닭, 칠면조 1일, 일부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일부 휴약기간 표시없음) | 닭 2일, 칠면조 2일, 산란개시 2주 전부터 사용금지 | 21(닭) |
| 암피실린 함유 사료/음수첨가제 | 닭 | 1일용량으로 체중kg당 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또는 음수에 녹여 7일간 경구투여 | 닭 3일,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 닭 3일, 알 3일 | 20(알) |
| 타일로신(주석산염) 함유 음수첨가제 | 닭 | 음수 L당 500mg 이하의 양을 녹여 5일간 경구투여 | 닭 1일,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 닭 1일, 알 5일 | 21(알) |
| 틀트라주릴 함유 음수첨가제 | 닭 (산란계 제외) | 음수 L당 25mg 이하의 양을 녹여 2일간 경구투여, 5일 후 반복 경구투여 | 닭 8일, 14일, 16일, 일부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 닭 35일, 산란개시 8주 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5일 후 반복 용법 삭제 시 닭 16일, 산란개시 8주 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 23(알), 23(닭) |
| 틸미코신 함유 음수첨가제 | 닭 (산란계 제외) | 음수 L당 75mg 이하의 양을 희석하여 5일간 경구투여 | 닭 10일, 13일, 산란중인 닭 또는 산란계 사용금지 | 닭 10일, 산란개시 8주 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 23(알) |
| 틸바로신 함유 사료/음수첨가제 | 닭 (산란계 제외) | 사료 톤당 500g 또는 음수 L당 250mg 이하의 양을 혼합하여 3-5일간 경구투여 | 닭 5일, 산란중인 닭 사용금지 | 닭 5일, 산란개시 2주 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 23(알) |
| 플로르페니콜 함유 음수첨가제 | 닭(산란계 제외) | 1일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 이하의 양을 음수에 희석하여 5일간 경구투여 | 닭 2일, 5일, 산란계 사용금지 | 닭 2일, 산란개시 2주 전부터 사용하지 말 것 | 23(알) |

04 동물용 의약품 사용 및 관리

동물용 의약품 허가 부표(사용설명서) 예시

| | | | |
|---------|---|------------|---------------|
| | | 부 표 | |
| 업 제 명 : |  | 최초허가일자 : | 2016. 05. 18. |
| 제 품 명 : |  | 변경허가일자 : | 2017. 06. 19. |
| | () Diclas | | 2019. 06. 12. |
| 허가번호 : | 제 34 - 214 호 | | 2023. 07. 17. |

1. 원료약품 및 분량 (본제 1L 중)

[유효 성분]

◦ 디클라주릴(Diclazuril, EP) 25g

[첨가제 성분]

◦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KP) 등 적당량

2. 제형 및 성상

가. 제형 : 액제

나. 성상 : 미황색의 투명한 액제

3. 제조방법

동물용 의약품공정서 제제총칙 중 액제의 제법에 따라 제조한다.

4. 효능 및 효과

가. 닭 : E.tenella, E.maxima, E.acervulina 등에 의한 콕시듐증의 치료

5. 용법 및 용량

가. 닭(산란 중인 닭 사용금지) : 경구투여

음수 1리터당 본제 0.05~0.10ml(0.05~0.1ml/체중kg/일) 비율로 희석하여 2일간 연속투여한다.

6. 포장단위

100ml, 500ml, 1L, 5L, 10L

7.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가. 저장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조한 실온(1~30℃)에 보관

나. 용기종류 : 기밀용기

다.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8. 주의사항

가. 다음 환축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본제에 대한 쇼크와 과민반응이 있었던 동물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적용상의 주의

1) 물에 타서 사용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2) 음수에 혼합하여 투여할 경우 균질하게 혼합되지 않으면 약화사고를 초래하거나 투여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골고루 잘 혼합하여 사용하십시오.

다. 휴약기간 : 닭 2일, 산란개시 4주 전부터 사용금지

라.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동물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 유효성 및 안전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하여진 저장방법을 준수하십시오.

3)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폐기처리 하십시오.

4)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고 남은 것은 본래 포장용기를 밀봉하여 습기와 광선을 차단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5) 다 쓴 용기나 포장지는 안전하게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 기타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동물용 의약품이므로 사람에게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3)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십시오.

4) 지정된 축종 이외에는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오남용 및 내성출현 예방을 위하여 동물약품의 사용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오남용에 의한 약화사고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범용량을 준수하십시오.

7) 남용에 의해 약화사고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제를 투여하면서 동시에 동일성분의 약품을 중복투여하지 마십시오.

8) 약물 투약기간 및 휴약기간 동안 식용으로 사용금지하십시오.

9)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축산물 내에 잔류될 수 있으므로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하고, 휴약기간동안 동물이 오염된 사료, 물, 배설물 등을 통해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0) 취급자는 장갑, 마스크, 보호의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직접적인 피부접촉이나 흡입을 피하여주십시오.

11) 약물 취급시 피부나 눈에 접촉되었을 경우는 즉시 깨끗이 씻어낸 후 이상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12)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조사 또는 판매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비고 : 동물용 의약품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www.medi.qia.go.kr) → 통합검색 또는 의약품·의약외품 정보검색 → 제품(영문)명, 업체명, 성분명 등으로 검색 → 기본정보, 원료약품,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휴약기간 등)

1 medi.qia.go.kr/searchMedicine?csSignature=bjEgMFCP3lrWI%2Bz2bnj8dQ%3D%3D&sort=&sortOrder=false&searchYn=true&ExcelRowdata=&page=1&searchDivision=detail&itemName=...

2 어떤 동물용의약품이 궁금하신가요?

3 의약품 정보검색 | 의약기기 정보검색

4 streptomycin

| 순번 | 제품명 | 제품영문명 |
|----|----------------|--|
| 1 | 페니 렘토 20/25 LA | Penicillin G Procaine and Dihydrostreptomycin Sulfate Suspension 20:25 |

5 효능효과

다이하드로스트렙토마이신, 페니실린G 프로카인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가. 소
- 유효균종: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coccus agalactiae, Streptococcus dysgalactiae

- 적응증: 유방염

나. 돼지
- 유효균종: Streptococcus suis

- 적응증: 관절염,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용법용량

체중 kg당 분제 0.04mL을 1일 1회 근육주사

※ 단, 한 부위 당 주사량이 5mL이 넘지 않도록 할 것

사용상의주의사항

가. 다음 환축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본제 및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에 대한 쇼크와 과민반응이 있었던 동물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부작용

1.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는 신독성, 이독성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을 과량 투여 시 경련이나 발작 등의 신경계 이상이나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 상호작용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정비

3-1 축산물 잔류허용기준 정비(식약처 주관, 농식품부 협조)

추진 현황

동물용의약품 정비 · 확충에 맞추어 식품 잔류허용기준 · 시험법 신설 · 조정(식약처 주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제도 개선

- 축종 추가 기준 상향 등 기준 제개정 요청
- 부처간 협의
- 관련 기준 개정·시행
 - ※ 예시)암프로리움(알 기준 신설: '21.9.30), 자료면제대상(케토프로펜 신설: '22.6.30), 디클리주릴(알 기준 신설 '23.8.31), 항생제 4종 개정(24.5.17, 클로피돌(신설), 나라신·마두라마이신·샘두라마이신(불검출 기준 삭제), 동약으로 기준 일원화(사이로마진, 아미트라즈, 아바멕틴, 이버멕틴), 농약으로 기준 일원화(카벤다짐))
- 축수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 동시다성분시험법 신설
 - ※ 축수산물 동시다성분(157종) 시험법 신설 (개정 22.2.21., 시행 2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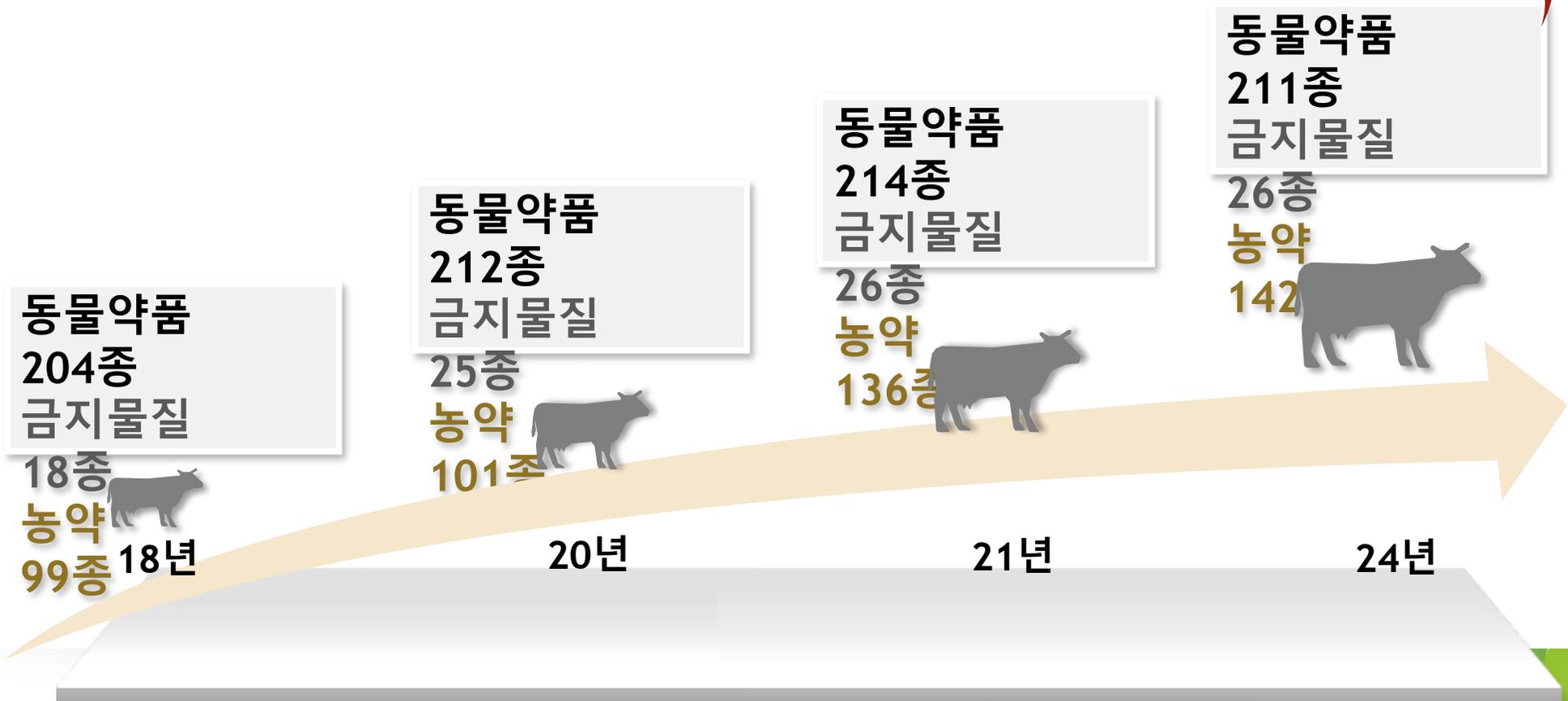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현황

3-2 축산물 잔류허용기준 정비

잔류 허용 기준 현황(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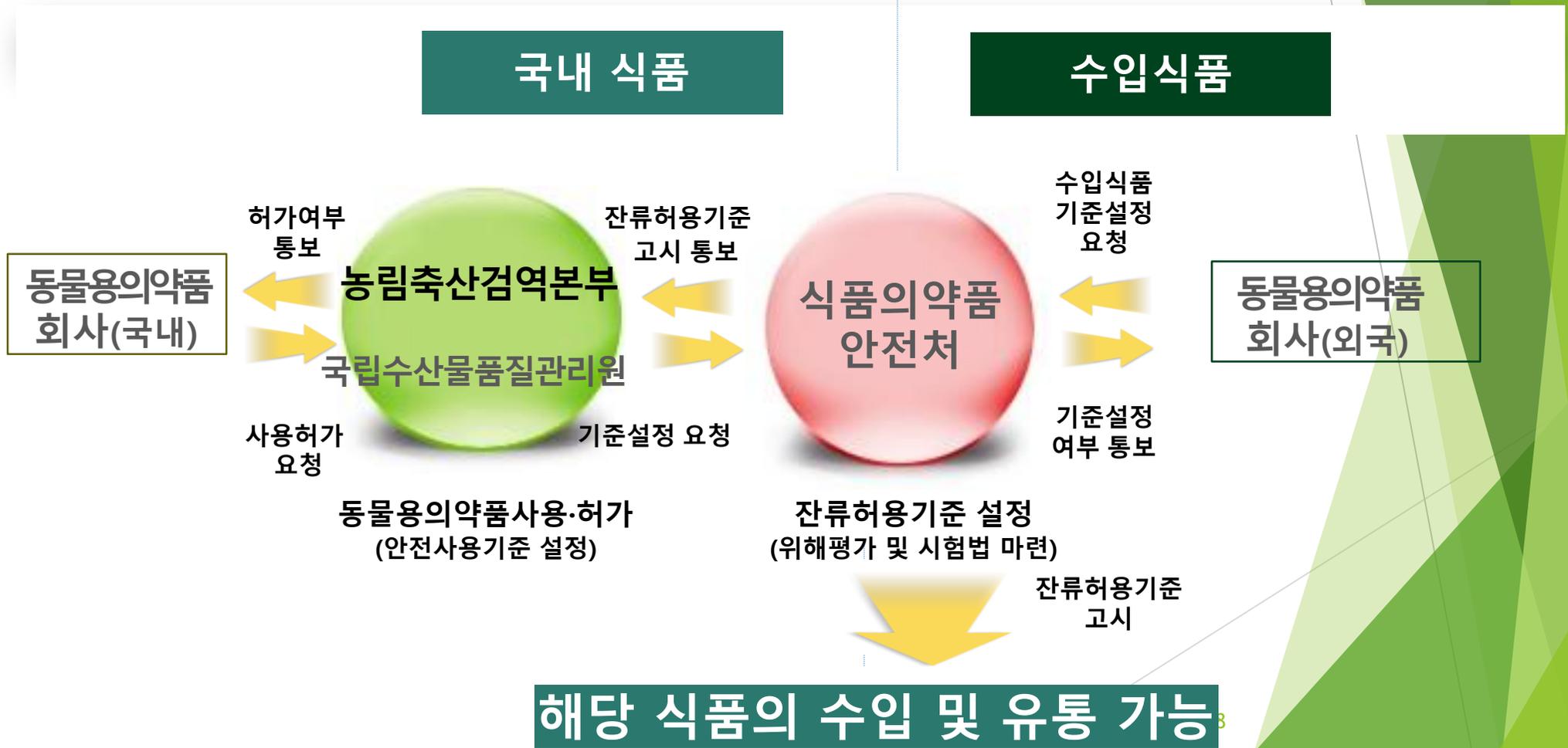
- 항균제 87종
- 구충제 26종
- 살충제 21종
- 지사제 3종
- 진정제 7종
- 항원충제 23종
- 성장보조제 9종
- 항히스타민제 2종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13종
-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4종
- 기타 16종



02 축산물 PLS 도입 방향 및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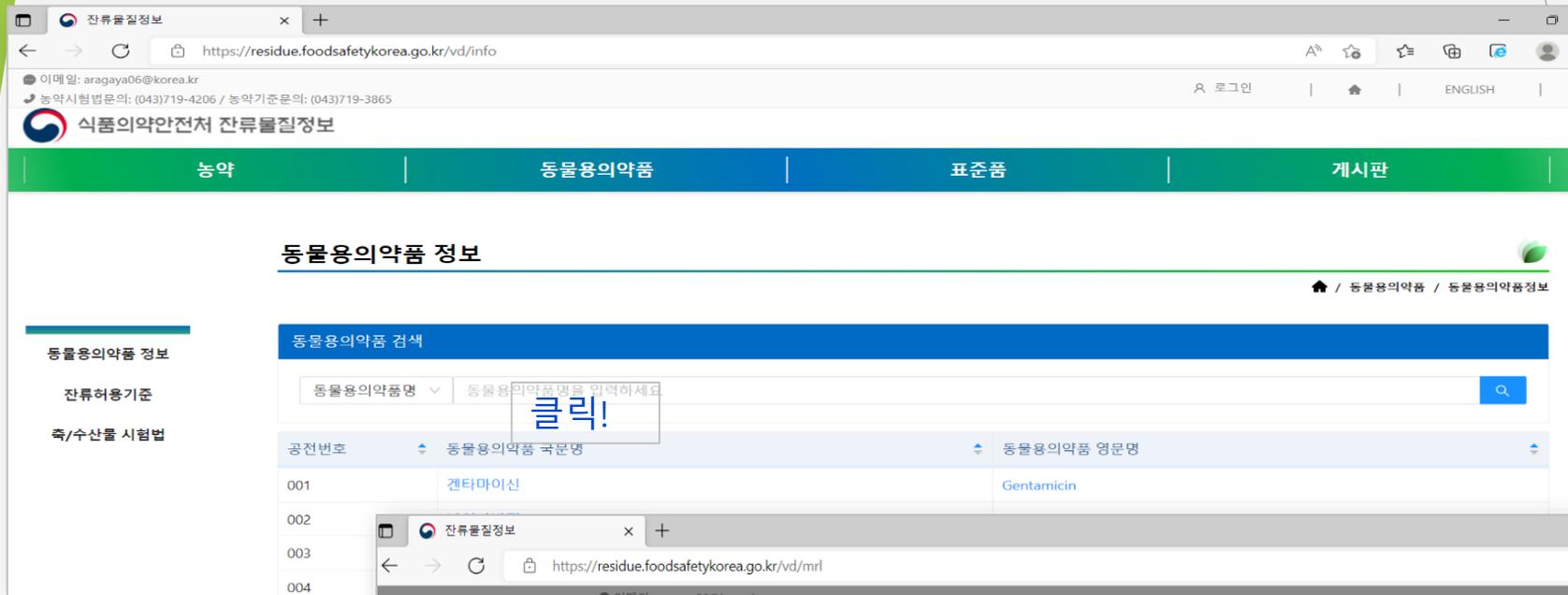
축산물 PLS 도입을 위한 세부 과제 및 추진 실적

3-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절차 (식약처 주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제·개정 사항(잔류물의 정의, 용도, 계통, 상품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정보 검색 (residue.foodsafetykore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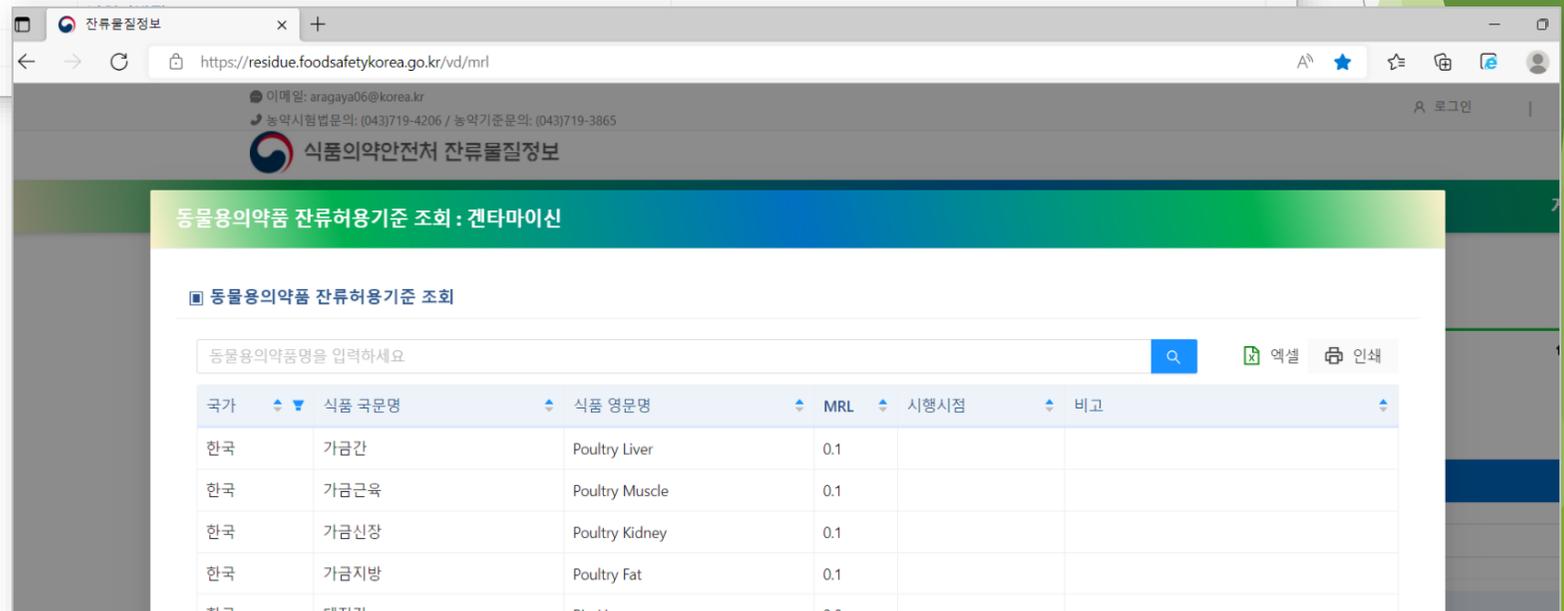
동물용의약품 정보

동물용의약품 검색

동물용의약품명 동물용의약품명을 입력하세요

공전번호 동물용의약품 국문명 동물용의약품 영문명

| | | |
|-----|-------|------------|
| 001 | 겐타마이신 | Gentamicin |
| 002 | | |
| 003 | | |
| 004 | |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조회 : 겐타마이신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조회

동물용의약품명을 입력하세요

| 국가 | 식품 국문명 | 식품 영문명 | MRL | 시행시점 | 비고 |
|----|--------|----------------|-----|------|----|
| 한국 | 가금간 | Poultry Liver | 0.1 | | |
| 한국 | 가금근육 | Poultry Muscle | 0.1 | | |
| 한국 | 가금신장 | Poultry Kidney | 0.1 | | |
| 한국 | 가금지방 | Poultry Fat | 0.1 | | |
| 한국 | 대지가 | Pig Liver | 2.0 | | |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행 개선

4 동물약품 처방·유통·사용 관행 개선

추진 방법

명확한 질병진단 및 처방에 의한 약품구매 및 사용준수 견인

제도 개선

축산법, 수의사법, 약사법 개정

| 내용 | 관련 규정 |
|-----------------------------|----------------------------------|
| • 축산농가 의무교육 횟수 확대(2년1회→연1회) | • 「축산법」 |
| • 축산농가의 동물약품 사용내역 기록 의무화 | • 「축산법 시행규칙(별표3의3)」-축산업허가업자 준수사항 |
| • 동물용의약(외)품 판매 기록 의무화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 • 소독제 및 구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
|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 • 「수의사법」 |
| • 처방대상 항생제 확대(32종→전성분) |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지도·홍보

- (수의사) 처방의무 확대 및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개편, 축종별·질병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배포
- (동물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도매상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및 유통 동물약품 수거검사
- (축산농가) 의무교육(신규:위생안전관리 2시간, 보수:친환경동물복지 2시간)에 PLS 교육 반영('21~, 29만명)
축종별 축산물 PLS 교육영상 제작·축산경영주 개별 배포, 리플릿·포스터 제작·배포 등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행 개선-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사항



보관관리

- 별도의 장소에 보관, 허가받은 사람만 취급
- 햇빛을 차단하고, 적정 온도에서 보관
- 개봉 후에는 빨리 사용하고, 유효기간을 확인



약품투여

-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기준(대상가축, 용법용량, 휴약기간) 준수
- 사료첨가용 : 소량의 사료에 배합 후 전체사료 배합
- 음용수용 : 건강한 가축이 더 많이 섭취하는 부분 유의, 음수투여 전후에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관과 음수통을 세척
- 주사제용 : 일회용 주사기 또는 자동주사기 사용



부작용 발생 시 조치

- 수의사 또는 공급자에 알리고 응급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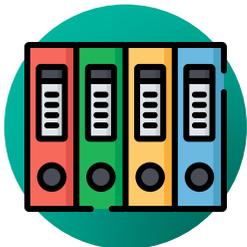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행 개선-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사항



휴약기간 준수

- 수의사 처방과 제품설명서의 휴약기간 준수



기록관리

- 동물용의약품등의 명칭
-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 대상동물의 종류, 동물수, 특징 및 식별
- 동물용의약품등의 용법 및 용량 등 사용량과 치료기간
-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한 날짜(연월일)
- 사용 대상동물과 그 생산물(유, 알 등)의 휴약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출하가능일자)
- 동물용의약품등의 구매처



해충구제제, 축사소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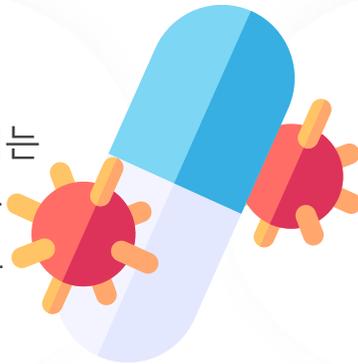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동물체내에 남아 잔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사용기준(빈축사 등)을 철저히 준수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항생제 사용주의-항생제 내성균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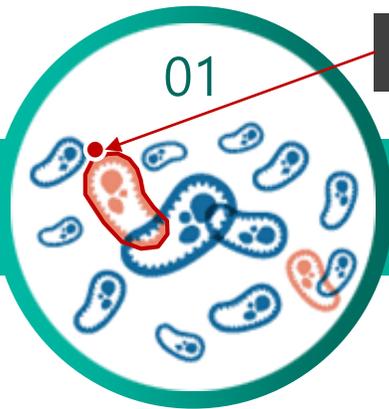
항생제

- 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주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
- 세균 종류와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항생제가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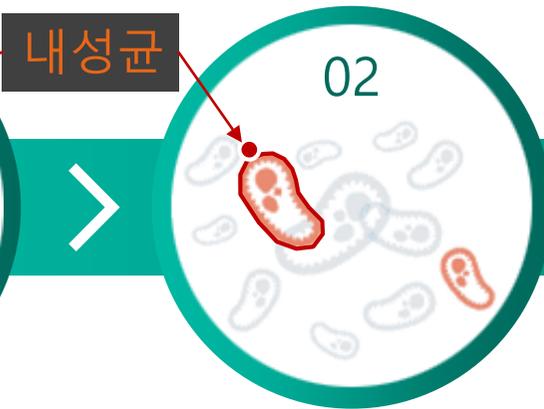


항생제내성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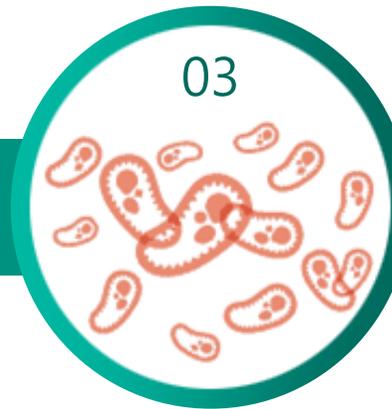
- 항생제를 사용하면 세균 중 일부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항생제에 효과가 없어짐
-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내성이 있는 세균만 살아남아 질병을 치료할 항생제가 없게 됨



많은 세균 중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일부가 존재



항생제 투여로 내성균만 남고 나머지 세균 제거



내성균의 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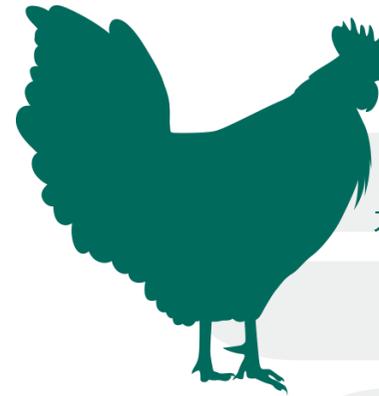


내성균이 내성을 내성이 없는 세균에도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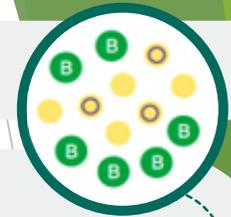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항생제 사용주의-가축 항생제 내성 위험성

- 항생제 내성균이 오염된 축산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
- 가축 분변, 퇴비 내 항생제 내성이 농작물 및 환경으로 전달
- 가축과 직접 접촉으로 가축 내성균이 축산종사자에게 전달



가축의 장에는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낮은 농도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면 내성에 생긴 균들이 생겨납니다.



내성균은 가축은 물론, 식품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됩니다.



내성균은 축사 주변의 환경으로 전파됩니다.

04 동물용 의약품 사용 및 관리

항생제 사용주의-항생제 내성과 농가의 손실

항생제 남용은 농가의 손실



감수성 검사 없이
효과 없는 항생제를 쓸 경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투약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내성균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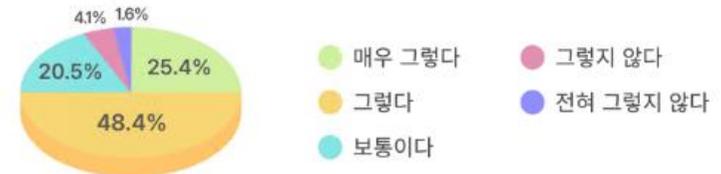
과다 투여로 농가의
동물약품 비용이 증가합니다.



농장 내 내성균이 생기면
향후 더 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인식

Q. 항생제 내성 문제가 축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가?



Q. 일반 축산물보다 가격이 비싸도 무항생제 축산물을 구매할 것인가?



Q. 향후 축산물 선택 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여부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항생제 사용주의-신중사용 실천 방안

농가 항생제 신중 사용,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수의사 처방



수의사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은 항생제만 사용합니다.



② 사용설명서 준수

정해진 용량과 용법, 그리고 투약 경로를 준수합니다.



감수성 검사

유효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가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면 항생제 내성균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은 우리 가족과 소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축사 위생과 건강한 사육 관리를 통해 항생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련 가축 소유자 및 관리자 준수사항(법률)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3항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함

제98조(과태료)제1항10호 :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기준이란 대상가축, 용법용량, 휴약기간을 말함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3의3
축산업 허가자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약사법에 따라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한 날짜, 제품병, 사용량,
구매처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동안 보관

제56조(과태료)제1항6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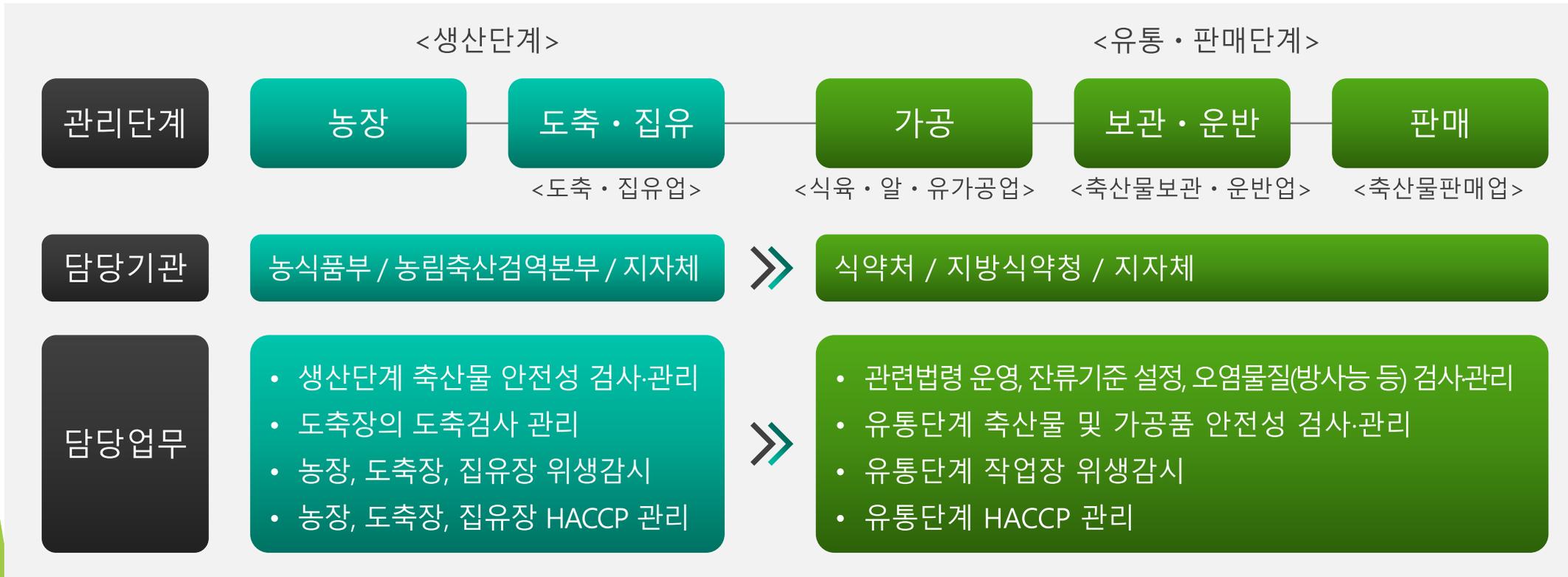
제26조 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안전관리 현황

축산물 안전관리 현황

농식품부는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식약처는 유통단계(가공, 보관·운반, 판매)의 HACCP 관리, 위생감시 및 안전성 검사 담당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안전성 검사 규정 및 업무절차

검사목적



식육·식용란·원유에 대한
안전성검사계획(**잔류물질**·미생물)
수립·시행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

(생산단계) 식육·식용란의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유통단계)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 및 수거검사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9조(출입. 검사. 수거),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 '24.1.16.)
-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 '20.5.29.)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 '22.3.31.)
-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 '21.6.4.)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 NRP)

정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

NRP 검사 종류

① 모니터링



유해성 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실시하는 잔류 검사



② 규제검사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 기립불능 및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는 가축 대상을 대상으로 잔류 검사



③ 탐색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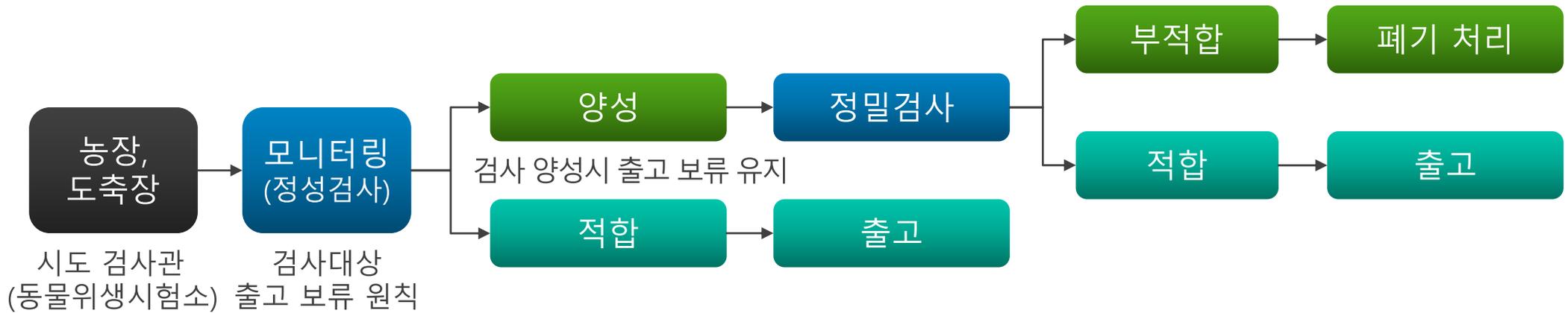
국내 MRL 부재, 기존 NRP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 또는 문제가 되는 유해물질의 잔류 검사

| 구 분 |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 | | |
|------|--------------------------------------|----------------------------------|--|
| | 정성검사 | | 정량검사 |
| | 모니터링 검사 | 규제검사 | |
| 검사기관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 |
| 검사기간 | 1.1.~12.31. | | |
| 대상품목 | 국내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 및 말고기, 국내 식용란 | | |
| 검사목적 |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를 통한 식육/식용란의 위생상태 파악 등 | 의심되거나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농장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 정성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잔류물질 항목 검사 |
| 대상물질 | 미생물 | 식육: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식용란: 살모넬라균 | - |
| | 잔류물질 | 식육: 항생물질, 호르몬, 농약 등 | |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절차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절차도



- 정밀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식육)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 (해당 농가) 잔류위반농가 지정

- * 동물약품사용기준 위반시는 과태료 부과
- * 6개월간 규제검사 실시 및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5,6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 강화 및 비의도적 오염 방지

잔류물질 안전관리

국제기준 수준의 생산단계(도축장·집유장) 축산물 잔류물질(항생제, 농약 등) 검사체계 구축, 부적합물 폐기 및 해당농가 집중관리

- 국내 축종별 사육두수, 약품판매실적, 위반물질 등을 기반으로 검사항목 설정
 - * 검사대상 : (대상) 식육, 식용란, 원유 / (성분)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 * (24년 실적) 식육 106,396두 157,652건, **식용란 3,375시료** 9,856건, 원유 352건
 - * (24년 위반, 모니터링 +규제) 식육 259두, **식용란 없음**, 원유 13건
 - * (25년 계획) 식육 74,120건(185항목), **식용란 5,880건(81항목)**, 원유 300건(71항목)
- 부적합 농가대상 집중관리로 식육 부적합률 지속 감소 추세
 - * 부적합률(모니터링검사 부적합%) : ('20) 0.12 → ('21) 0.07 → ('22) 0.08 → ('23) 0.05 → ('23) 0.11
 - * 미국, 유럽의 부적합률(0.2~0.3%)에 비해 **안전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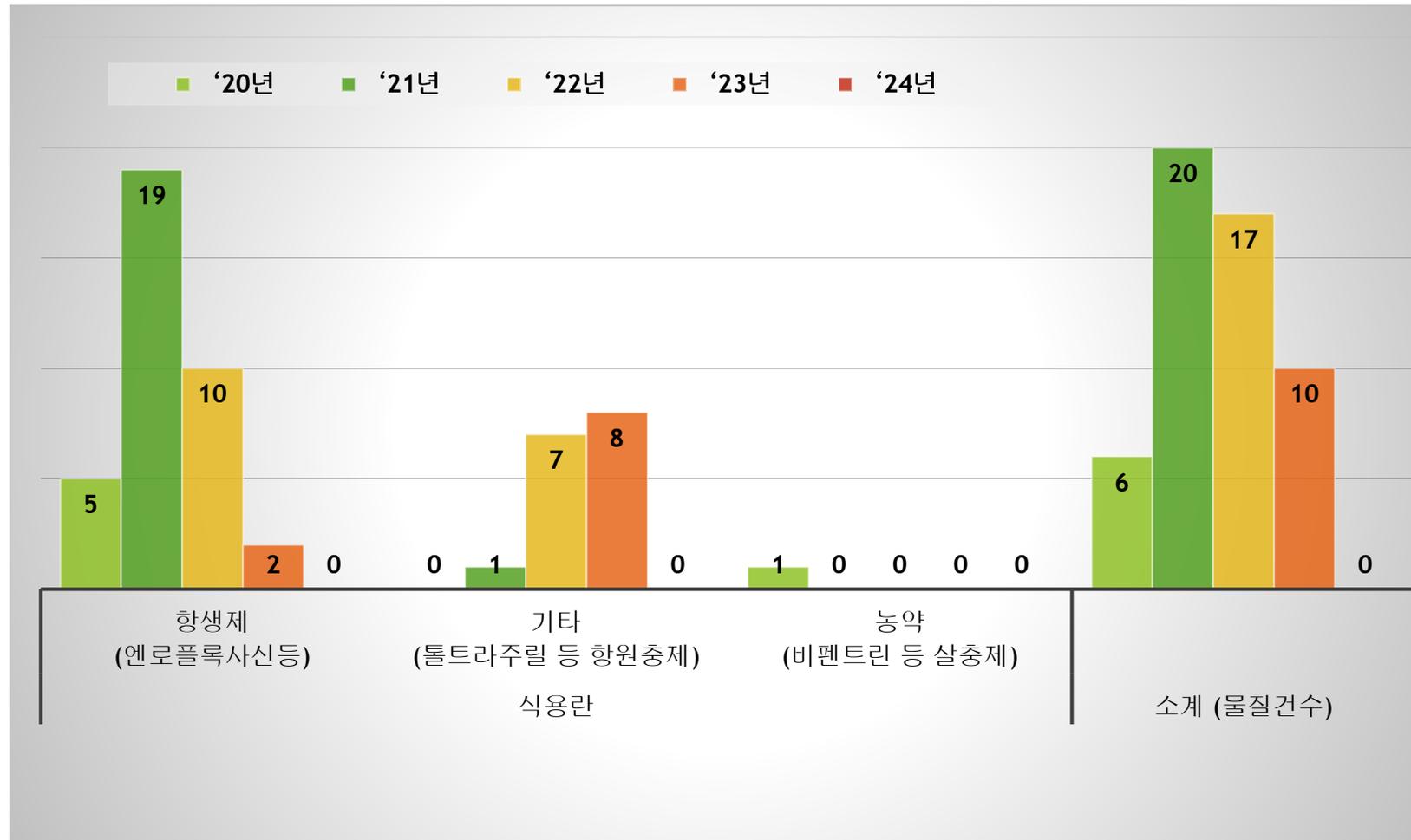
비의도적 오염 방지

사료 내 비의도적 혼입 농약 모니터링

- 사료 600점(국산, 수입) 대상 동물약품 121종, 농약 327종 조사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식용란 위반검출물질수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연도별 주요 위반물질



대장균증, 살모넬라증에 치료제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추정: 엔로플록사신 주로 검출, **축사살충제 비펜트린**, 음수투여 **진드기구제제 플루탈라너** 검출

- 사료에 의한 비의도적 혼입가능성 고려 **항원충제(8종)** 중 2종 (모넨신, 클로피돌) 검사 추가('24년), 디클라주릴 기준 신설, 음수 첨가 항원충제 톨트라주릴 기준 신설

나라신, 라살로시트나트륨, 마두라마이신암모늄, 모넨신나트륨, 살리노마이신, 샘두라마이신, 디클라주릴, 클로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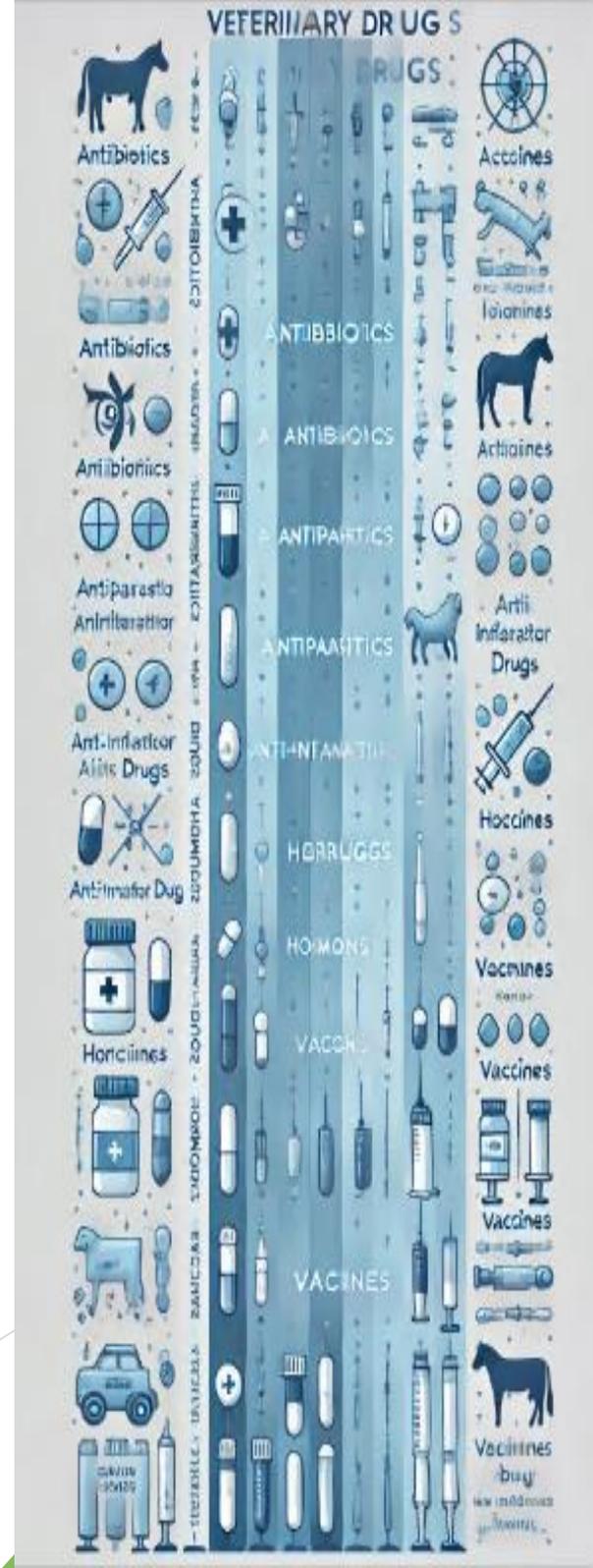
| 닭 | 2022 | | 2023 | | 2024 | |
|---|------|---|----------------|---|----------------|---|
| | - | | 6두 (2종 6건) | | 10두 (3종 10건) | |
| 1 | - | - | 비펜트린 | 5 | 플루탈라너 | 7 |
| 2 | - | - |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 1 |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 2 |
| 3 | - | - | - | - | 비펜트린 | 1 |



1 디클라주릴
항원충제 휴약기간: 닭 2일, 산란개시 4주전 금지
'21년 8월 유통계란에서 위반
'22년 신규추가 '23. 8월 기준신설(0.01mg/kg)

2 톨트라주릴
항원충제, 휴약기간: 닭 16일 산란개시 8주전 금지
'23년 4월 유통계란에서 위반
'24년 신규추가, '24.1월 PLS적용에 따라 0.01mg/kg

| 식용란 | 2022 | | 2023 | | 2024 | |
|-----|----------------|----|-------------|---|------|---|
| | (2종 17건) | | (3종 10건) | | - | |
| 1 |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 10 | 톨트라주릴 | 8 | - | - |
| 2 | 디클라주릴 | 7 | 설파제(설파메톡사졸) | 1 | - | - |
| 3 | - | - | 플로르페니콜 | 1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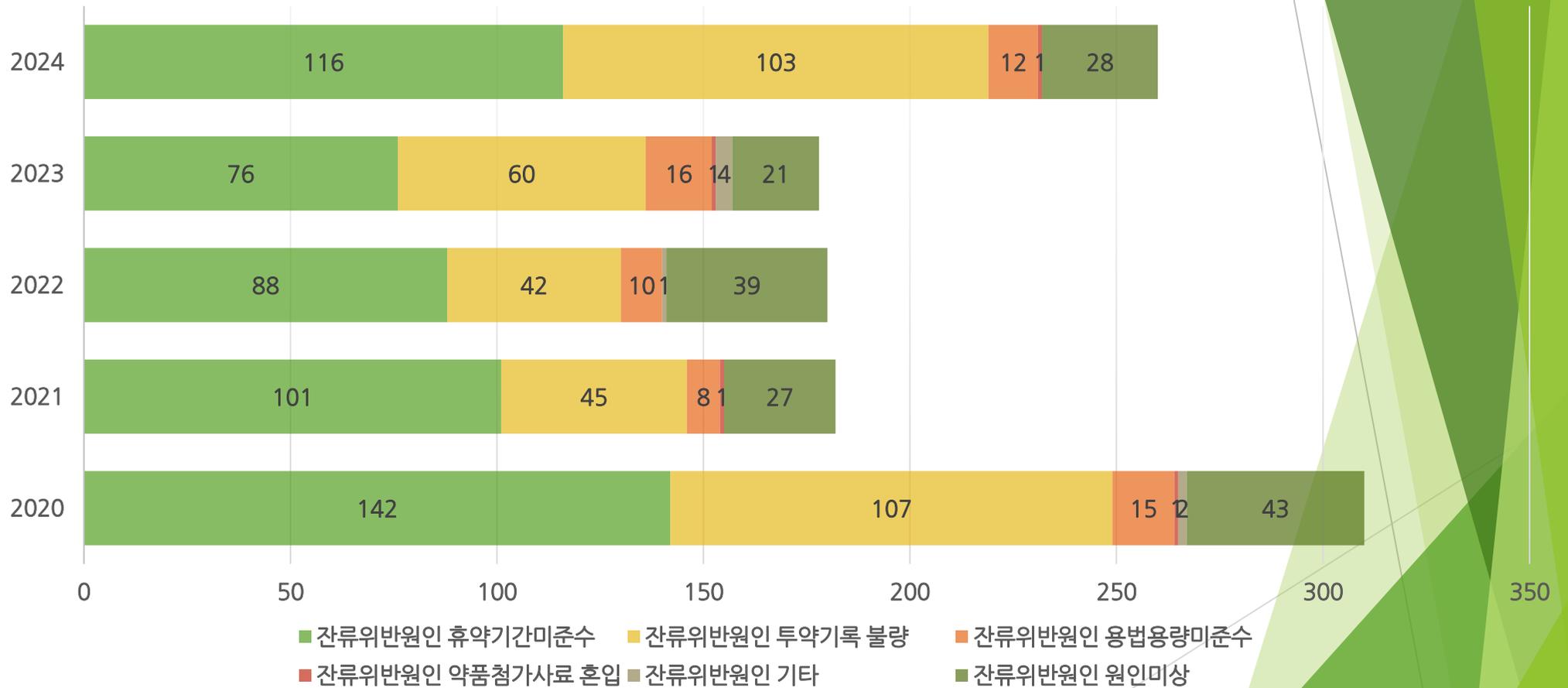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잔류위반 원인조사 결과

주요 잔류 위반 원인

휴약기간 미준수, 용법용량 미준수(권장량 초과투여)가 70% 이상 차지



기타요인

대사이상, 과거 사용 살충제 해당축사 잔류, 사료첨가제 약물의 혼입 교차오염 등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PLS 위반사례 조사

케토프로펜(비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 과량 투여 사례 빈번히 발생

- 수의사비처방 의약품
 - 휴약기간이 소 4일, 유에는 없음.
 - 원유에서 부적합 사례가 다수 발생
- 용법, 용량에 맞추어 사용 시 문제가 없으나, 유에 휴약기간이 없는 것을 현장에서 과용량을 투여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여 과다용량 투여 사례 빈번히 발생

멜록시킴(비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 휴약기간 미준수로 부적합 사례 발생

- 수의사처방 의약품
- 휴약기간이 소 15일, 유 5일로 설정되어 있음.
- 휴약기간에 비해 잔류소실기간이 짧다는 소문이 돌아 휴약기간이 ³⁶도래하기 전에 출하 혹은 착유하여 부적합 사례 발생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PLS 위반사례 조사

휴약기간 미준수, 투약내역 미기록에 따른 위반사례 대부분 PLS 제도 뿐 아니라, 휴약기간 준수, 대장 작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소, 젖소의 경우, 항생제 치료 후 휴약기간 지키지 않고, 기립불능우로 도축장 출하하여 규제검사에서 잔류물질 검출
- 흑염소의 경우, 휴약기간에 대한 인지 없이 도축장 출한 전 항생제 투여하여 모니터링 검사 등에서 검출
- 산란계의 경우, 휴약기간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투약기록대장 등 작성하지 않고 식용란에서 항생제 검출

엔로의 경우, 가금에 사용금지
(‘21. 10.31.)

05 축산물 잔류물질 위반 사례

잔류위반 원인조사 결과 (사례)

잔류원인조사결과

잔류원인조사결과

1.

2. 사육현황

- 축종 :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면양 염소 기타
- 사육두수 : 11만수(입식 중)
- 사육단계별 급여사료 및 첨가약제

| 사육단계별 | 급여사료명 (제조회사) | 첨가약제명 | 첨가농도 (ppm) | 휴약기간 (일) |
|-------|--------------|-------|------------|----------|
| - | 체리부로 사료 | - | - | - |

3. 해당시료 채취 및 잔류물질 검출현황

- 시료채취일 : 2023년 8월 2일
- 채취장소(도축장 및 검사기관) : (주)정우식품,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 출하두수 : 35,500수
- 검출물질 및 농도(ppm) : 기준초과 검출물질
-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근육 0.2mg/kg) / 허용기준(근육 0.1mg/kg)
- 규제검사기간 : 2023.8.3. ~ 2024.2.2.

4. 잔류원인조사내용

가.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

- 투약약물 제품명 : 패트돌 (유효성분 : 엔로플록사신)
- 투약기간 : 1일, 1회 ○ 투약경로 : 사료 첨가 ○ 투약용량 : 1kg/톤
- 휴약기간(일) : 제조사 권장기간(돼지 10)일, 투약개시일(2023년 7월 11일) 투약종료일(2023년 7월 11일), 가축출하일(2023년 8월 2일)

▷ 휴약기간 준수여부 : 준수 미준수

- * 제조회사의 권장 휴약기간 이상 휴약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미준수
- ▷ 투약기록여부 : 기록 미기록
- ▷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여부 : 유 무
- ▷ 권장량 투약여부 : 권장량 권장량 초과

나. 출하직전 후기사료(출하용) 급여여부 : 급여 미급여

다. 약제 및 사료의 구분보관 여부 : 구분보관 혼합보관

라. 사용설명서의 대상축종이 아닌 다른 축종에 사용여부 : 유 무

마. 기타 :

* 원유, 계란 등 위반개체의 생산물여 잔류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

5. 잔류원인조사 결과 종합의견

- 해당 가축(육용종계) 출하 3주전 대장균증 치료를 목적으로 엔로플록사신 성분의 돼지 사료첨가제를 사용 (약물 사용설명서의 대상축종(돼지)이 아닌 다른 축종에 사용)

6. 향후 잔류방지 제도 및 홍보사항

- 약물 사용설명서 숙지 후 사용토록 조치
- 항생제 부여 휴약기간 및 부여량 준수
-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수의 준수
- 수의사 처방제 실시
- 6개월간 규제검사 등

1.

2. 사육현황

- 축종 :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면양 염소 기타
- 사육두수 : 토종닭 (현재 사육두수 없음)
- 사육단계별 급여사료 및 첨가약제

| 사육단계별 | 급여사료명 (제조회사) | 첨가약제명 | 첨가농도 (ppm) | 휴약기간 (일) |
|-------|--------------|-------|------------|----------|
| - | 나동사료 | - | - | - |

3. 해당시료 채취 및 잔류물질 검출현황

- 시료채취일(도축일자/도축장) : 2024년 7월 19일 (2024년 7월 18일(주)참프레)
- 채취장소(검사기관) : 롯데마트 고양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출하두수(도축두수) : 6,122수
- 검출물질 및 농도(ppm) : 톨트라주랄근육 0.6mg/kg / 허용기준(근육 0.1mg/kg)
- 규제검사기간 : 2024.7.30. ~ 2025.1.29.

4. 잔류원인조사내용

가.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

- 투약약물 제품명 : 점콕스 (유효성분 : 톨트라주랄)
- 투약기간 : 2일(6.16 ~ 6.17.) ○ 투약경로 : 음수 ○ 투약용량 : 500ml/500kg/일
- 휴약기간(일) : 35일 (16일→35일로 변경(2023.12.26.)
- 투약개시일/투약종료일 : 2024.6.16. - 2024.6.17.

▷ 휴약기간 준수여부 : 준수 미준수

- * 제조회사의 권장 휴약기간 이상 휴약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미준수
- ▷ 투약기록여부 : 기록 미기록
- ▷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여부 : 유 무
- ▷ 권장량 투약여부 : 권장량 권장량 초과

나. 출하직전 후기사료(출하용) 급여여부 : 급여 미급여

다. 약제 및 사료의 구분보관 여부 : 구분보관 혼합보관

라. 사용설명서의 대상축종이 아닌 다른 축종에 사용여부 : 유 무

마. 기타 :

* 원유, 계란 등 위반개체의 생산물여 잔류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

5. 잔류원인조사 결과 종합의견

- 해당 축산물 제제는 2023.12.26. 휴약기간이 16일→35일로 변경되었음
- 축주는 해당제제를 2023.9월30일 구입하였으며 이후 해당제제의 휴약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약물 제조업체나 약물판매소에서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
- 축주는 해당제제 휴약기간이 35일로 변경된 사항을 인지 못하고 기존 부표의 내용대로 격정용량 투약 및 휴약기간(16일)을 준수한 후 출하하였음

6. 향후 잔류방지 제도 및 홍보사항

- 약물 사용설명서 숙지 후 사용토록 조치
- 항생제 부여 휴약기간 및 부여량 준수
-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수의 준수
- 수의사 처방제 실시
- 6개월간 규제검사 등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PLS 관련 닭에서 모니터링 결과

데코퀴네이트, 디클라주릴, 스트렙토마이신, 클로피돌, 탈미코신, 페닐부타존, 플로르펜니콜 모니터링

- 닭에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 판매실적 기준으로 위해도가 가장 높은 물질 선정
- 12개 시도에서 수집된 48개 농가 시료(알)에서 모니터링 결과 모두 불검출

| 번호 | 성분명 | 판매 실적(단위: kg) | MRL (mg/kg) | |
|----|---------------------|---------------|-------------|------|
| | | | 닭 근육 | 알* |
| 1 | 데코퀴네이트(항원총제) | 1,646 | 1.0 | - |
| 2 | 디클라주릴(항원총제) | 1,088 | 0.5 | 0.01 |
| 3 | 스트렙토마이신(항균제) | 2,265 | 0.6 | - |
| 4 | 클로피돌(항원총제) | 15,550 | 5.0 | 0.02 |
| 5 | 탈미코신(항균제) | 5,684 | 0.15 | - |
| 6 | 페닐부타존(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 2,358 | 불검출 | - |
| 7 | 플로르페니콜(항균제) | 22,269 | 0.1 | - |

* 재평가 결과 산란개시?주전 산란계 사용 금지

05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PLS 위반사례에 따른 조치사항

1

디클라주릴 항원총제

휴약기간: 닭 2일, 산란개시 4주 전 금지

'21년 8월 유통계란에서 위반
'22년 신규 추가, '23. 8월 알 기준 신설(0.01mg/kg)
- 알 기준이 없었던 것을 신설

2

톨트라주릴 항원총제

휴약기간: 닭 35일, 산란개시 8주 전 금지
닭 16일, 산란개시 8주 전 금지 (5일후 반복용법 삭제 시)

'23년 4월 유통계란에서 위반
'24년 신규 추가, '24. 1월 PLS 적용에 따라 0.01mg/kg
- 불검출 기준 삭제하여 PLS 적용

산란계의 경우 주의사항중 산란 개시 8주 전부터 사용금지 꼭 확인!
유효성분이 같아도 용법 용량이 다르면 휴약기간이 달라질수 있어요!

06 축산물 PLS 관련 축산농가 준수사항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1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할 것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10) 미준수시 영업정지1개월·3개월, 허가취소 등)
- 2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약사법 시행령 별표 3. 퍼. 미준수시 30만원·45만원·70만원 과태료)
- 3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 4 **동물용 의약품등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축산법 시행령 별표 4. 자. 미준수시 250만원·500만원·1천만원 과태료)

06 축산물 PLS 관련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준수사항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준수사항

1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판매하여서는 안되는 약품

-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약품
-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약품
- 제형과 약리적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약품

2

「동물약국 개설자는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음. 다만,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판매할 수 없음

3

동물약품등을 판매하는 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보존

4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의2(투약지도), 제22조(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13호와14호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가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투약지도,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처방전(2년)과 판매기록(3년)을 보존하여야 함(동물약품등의 거래현황 작성·보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6 축산물 PLS 관련 수의사 준수사항

약사법, 수의사법,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준수사항



1

「약사법」 제85조제4항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제1항5호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는 진료를 행한 후 동물약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약국개설자로부터 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현황 작성·보존(1년)**하여야 함(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구입 사용하는 경우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수불현황 기록, 1년 간 보존**

2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및 제12조의 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처방관리시스템), 진료부 1년간 보존**하여야 함(위반 시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

3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4조(수의사사용특례) 수의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해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경우는 대상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표의 "출하제한지시서" 를 발급하여야함. 이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을 출하제한기간으로 지시하여야함

(별표) 출하제한기간 지시서(연월일, 관련동물 종류·두수·명호·성·년령 또는 특징, 출하제한기간, 처방내역 등)

06 축산물 PLS 관련 축산농가 준수사항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가지 수칙 - 꼭 지켜주세요!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합니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 또는 빈 축사에만 사용합니다.



3 사용용량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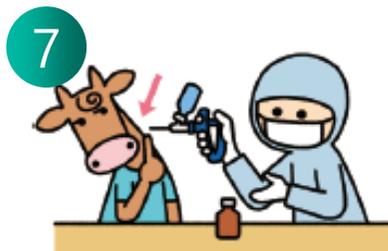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합니다.



5 사용방법(투약경로)를 반드시 준수합니다.



6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7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합니다.



8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합니다.



9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10 의문이 있는 경우 진료 담당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06 축산물 PLS 관련 축산농가 준수사항

산란계,육계,토종닭 농장 - 꼭 지켜주세요!

산란계·육계·토종닭 농장

※ 동물용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QR코드)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준수하여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① 수의사가 진료 후 처방한 약품을 쓰고, 사용내역을 기록해서 1년 간 보관해요

- 출하하기 전에 약품 사용내역 기록부의 휴약기간, 출하가능일자를 반드시 확인
- 휴약기간, 투여량 지키지 않아 잔류허용기준 초과되면 부적합 판정되고 과태료 부과

(예시)

| 연월일 | 개체번호(축사) | 개월령(체중) | 증상 | 제품명 | 사용량(cc) | 구입처(사용기한) | 휴약기간(출하제한기간) | 비고(출하가능일자 등) |
|-----|----------|---------|----|-----|---------|-----------|--------------|--------------|
|-----|----------|---------|----|-----|---------|-----------|--------------|--------------|

② 약품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출하제한기준 꼭 지켜요

- 대상가축(닭), 효능효과, 용법·용량(주사제, 사료용, 음수용), 휴약기간 등 주의사항
- 닭에게 허가되었으나, “산란 중에는 사용 금지”, “산란개시 ○주 전부터 사용 금지” 인 약품은 산란 중인 닭에는 사용하면 달걀에 잔류되요)
- 알에 휴약기간이 있는 경우, 투여·휴약기간 동안 낳은 알은 폐기해요
- 허가된 동물용 살충제를 사용하되, 계사를 완전히 비운 후 물청소(고압세척), 소독 후 전문가 검사를 거쳐 병아리 입소

③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계산하고, 사료·음수통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없는 사료·물만 급여해요

06 축산물 PLS 관련 축산농가 준수사항

'23년도 제작 축산물 PLS 홍보 포스터, 리플릿

2024년도 축산물 PLS 시작, 안전은 더 플러스 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킵시다!

- 1 사용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2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합니다.
- 3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4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합니다.
- 5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축산물 PLS란?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4년 1월 1일 부터 소·돼지·닭·우유·달걀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설정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잔류위반 농가 및 부적합 축산물 판정 시 제재사항으로

-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집중 관리
- 엄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
- 동물약품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용의약품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휴약기간 준수

- 1 휴약기간이란? 약용 투여 후 식육, 알, 우유 등에 잔류되는 약물이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데 필요한 시간
- 2 준수사항 휴약기간은 약물의 종류, 투여동물, 투여경로(주사, 음수, 사료첨가 등), 투여량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품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

(예) 제품 사용설명서에 휴약기간이 5일로 되어 있다면, 종료일 오전 0시에 마지막으로 투여할 경우 다음 날인 종료일 오전 0시가 휴약 1일이 되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 0시가 휴약 5일이 될 때, 마지막 투여 후 수요일 오전 0시에 출하해야 함.

항생제 오·남용 금지

- 1 항생제 오·남용 시 문제점
 - 항생제 장기 사용 시 내성으로 인해 질병 치료효과가 떨어집니다.
 - 항생제가 잔류된 축산물은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며, 축산물 소비 확구를 떨어뜨려 결국적으로 축산농가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축우 중인 소나 달걀을 낳는 닭에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우유나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 3 항생제 신중 사용 수칙
 -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투약
 - 감수성 검사를 통해 꼭 맞는 항생제만 사용
 - 사용설명서의 용량과 투약 방법 준수

축산 농장의약품 사용

+

동물용의약품

- 1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
- 2 건강한 가축 사육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 1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 (항생·항균제, 마취제, 호르몬제, 일부 생물학적 제제 등)
- 2 약사법 제85조 제9항에 따라 오·남용 우려 약물,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물, 재형과 약리 작용상 장애를 불러오는 약품으로 지정하여 판매 중

동물용의약품(외)품

- 1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않거나 경미하게 적용하는 제제로 질병 예방이나 농장, 동물 위생, 미용 등에 사용되는 품목
- 2 동물질병 예방용 소독제, 살균제, 해충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 살충제(동물용 체내로 흡수되어 작용하는 제제는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

※ 친환경 인증 농장은 친환경 농가 사용가용 제품인 후 사용

2024년도 축산물 PLS 시작, 안전은 더 플러스 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축산물 PLS란?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우유·달걀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동물용의약품(외)품 안전사용 안내

www.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동물방역 → 동물의약품

축산농장마다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고 지켜야 할 사항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킵시다!

- 1 사용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2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합니다.
- 3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4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합니다.
- 5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한우농장은?

- 1 소, 돼지, 닭 등 다축종 적용 약물 사용 시에 사전에 '소'에서의 휴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2 동일한 성분의 약물일지라도 제조사마다 휴약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합니다.
- 3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에 처방된 약물을 사용합니다.

양돈농장은?

- 1 구충제가 첨가된 배합사료를 급여할 경우, 동일 성분의 동물약품이 중복되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2 다축종 전 휴약기간 동안은 약물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만 급여합니다.
- 3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된 사료와 우유가 혼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젖소농장은?

- 1 소에는 허가되었으나 젖소에 사용금지된 약물이 있으므로 젖소에 사용해도 되는지 사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합니다.
- 2 우유에 휴약기간이 설정된 경우 약물투여 중 및 휴약기간 동안에는 우유를 폐기해야 합니다.
- 3 동물용의약품(외)품을 사용한 젖소는 개체식별번호 등을 이용해 별도 확인·관리합니다.

산란계·육계농장은?

- 1 '닭'에 허가된 약물일지라도 '산란 중'에는 사용금지라고 표기된 제품은 산란 중인 닭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2 만일 살충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동물용의약품(외)품으로 허가된 동물용 살충제를 사용하되, 계사를 완전히 비운 후 사용합니다.
- 3 닭에 휴약기간이 있는 약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물 투여 중 및 휴약기간 동안 폐기해야 합니다.

잔류위반 농가 및 부적합 축산물 판정 시 제재사항으로

- ✓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집중 관리
- ✓ 엄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 ✓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
- ✓ 동물약품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6 축산물 PLS 관련 축산농가 준수사항

'21~'23년도 축종별 PLS 교육 및 홍보 동영상

 농식품부, 유튜브에서 “**축산물PLS**”로 검색 가능



2024년 1월 축산물 PLS 시행!

기준이 없는 잔류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



홍보영상 다운로드

농식품부 > 맞춤 정책정보 > 소비자 > 농산물·축산물PLS > 축산물PLS > 홍보영상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